

위반사례 및 판례로 본 정치자금법 안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안내 ·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



일러두기

후원회와 후원금을 기부하는 후원인 및 기부가 제한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정치자금법 기부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및 판례의 안내를 통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그 시기·대상·목적·방법 등 행위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하여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 Contents

1. 불법 정치자금 수수	02
2. 후원인의 기부한도 초과	06
3.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	07
4.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하지 아니한 모금	09
5. 법인·단체의 불법 후원금 기부	10
6. 특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기부	12
7.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	16
8. 불법 후원금의 반환	18

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2조 (기본원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제1항),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위반 사례 및 판례

사 례 ①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500만원)

○○○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2002년 12월 초순경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건네받아 그 중 5천만원은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고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03년 1월 5일경 추가로 5천만원에 대한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2003년 2월경 □□□에게 2억원을 반환함.

※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제10조제3항 2010.7.23 신설〉

판례 I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판결 2006.2.10 선고 2004도7670〉

판례 II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판결 2004.8.20 선고 2003도8294〉

판례 III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 2003.12.5 선고 2003노2378〉

사례 ②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 (벌금 100만원)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본인의 통장으로 후원금 17,350,000원을 입금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함.

사례 ③ 타인 명의로 의한 기부 (벌금 1,000만원)

A그룹 회장인 ○○○은 잘 알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의 정치활동을 위해 1억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룹 재무이사 △△△을 불러 ‘◇◇◇후원회에 1억원 정도를 기부하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며 1억원을 전달하였고,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무이사 △△△은 회장 및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의 명의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1억원의 후원금을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함.

사례 ④ 현금 교부 (벌금 300만원)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정당의 최고 위원인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치활동에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유용하게 써 달라’면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함.

사례 ⑤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한 모금·기부 (벌금 300만원)

후원회를 두지 않은 ◇◇◇의 회계책임자 ○○○은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사은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모금한 2,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의 정치활동에 사용함.

사례 ⑥ 당비대납 (징역 1년)

○○○은 2005년 7월 말경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거나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중간모집책인 □□□ 등 선거구민 38명으로부터 입당 원서를 징구토록하고, 당원가입 및 당비 대납분으로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씩 총 103만원의 금품을 제공함.

사례 ⑦ 당비대납 (징역 6월)

◇◇◇구장애인협회 회장 ○○○은 동 협회 사무처장 및 사업부장과 공모하여 동 협회 회원들을 A정당(70여명 정도)과 B정당(30여명 정도)에 입당시킨 후, 정당에 가입한 이들이 부담할 당비 중 57만원을 협회의 공금에서 지원함.



2 후원인의 기부한도 초과

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을, 이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항).

위 반 사 례

사 례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벌금 230만원)

금융회사의 영업이사인 ○○○은 직원 5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후원회에 총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 가능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함.

3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

제12조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제1항),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습니다(제2항).

후원회의 모금한도액

후 원 회	연간 모금한도액	비 고
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후보자등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1억 5천만원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음(제13조).

① 대통령선거 :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③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위반 사례 및 판례

사 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선고유예)

◇◇◇후원회 회계책임자 ○○○은 2005년 12월 12일 이미 연간 기부한도 금액을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였고, 12월 13일 및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합 18,500,000원이 후원회 계좌로 기부됨으로써 이미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원(전년도 이월분 제외)을 상당 부분 초과되었음에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후원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22,640,000원을 후원회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초과 모금한 사실이 있음.

판 례

위 사례에서 보면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늦어도 2005년 12월 14일경에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12월 14일경 이후에는 후원금계좌를 폐쇄하거나 후원금 기부를 문의하는 후원자들에게 다음 연도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후원회 계좌로의 입금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판결 2010.7.15 선고 2007도7523>

4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하지 아니한 모금

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사 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하지 아니한 후원금 모금

(○○○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A당 연락책임자 □□□와 공모하여 2006년 1월 12일 경부터 1월 14일경까지 제4회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와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11인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후원회의 위임없이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함.

5 법인·단체의 불법 후원금 기부

제31조 (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제1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제2항).

위반 사례 및 판례

사례 ① 법인자금으로 후원금 기부 (벌금 1,000만원)

○○○은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시기에 법안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 상임위 소속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이사 □□□을 불러 전·현직 임원 15명 명의로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지급된 1억 5천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10개 후원회에 기부함.

사례 ② 기부 후 법인자금으로 변제 (벌금 200만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자녀와 관계사 임원 4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하고, 다음날 회사로부터 기부한 전체 금액을 변제받음.

사례 ③ 법인·단체자금으로 후원금 수수 (벌금 70만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004년 3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개의 법인·단체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706만원을 후원회 수입 계좌로 기부받음.



6 특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기부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사례 및 판례

사 례 ①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벌금 200만원, 추징 500만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에게 A은행의 상무로 근무하던 ○○○으로부터 은행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은행에 장기 저리자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회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함.

판례 I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융자금 배정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돈이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알선수재의 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판결 2001.7.27 선고 2001도435>

판례 II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결 1997.12.26 선고 97도2609>

사 례 ② 뇌물의 직무관련성

판례 I

○○○이 A의사협회로부터 B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의 자료제공을 부탁받고, 전화통화 내지 보좌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자료제공의 대가로 1,000만원을 후원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1,000만원은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짐으로써 뇌물죄가 성립함. <대법원판결 2009.5.14 선고 2008도8852>

판례 II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음. <대법원판결 1997.4.17 선고 1996도3378>

판례Ⅲ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되므로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1991.12.6 선고 91노2997>

사례 ③ 청탁의 알선없이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 (징역 5년, 정치자금법 무죄)

A주식회사가 추진중이던 ○○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같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시장에 대한 청탁을 받은 △△△가 자기는 ◇◇시장을 직접 알지 못하니 ◇◇시장을 잘 아는 같은 당 소속 B지구당위원장인 □□□에게 전화로 소개하여 주고 호텔커피숍에서 A주식회사 직원을 통하여 1,000만원을 받음.

판례

○○○의 정당내에서의 지위와, 같은 당 소속 B지구당위원장인 □□□ 및 같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참작하면 단순히 공무원인 ◇◇시장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인 같은 당 소속 B지구당위원장인 □□□를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소속 B지구당위원장인 □□□를 통하여 ◇◇시장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판결 2002.10.8 선고 2001도3931>

사례 ④ 공천 관련 기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는 A정당 지역협의회장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에게 공천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에게 공천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으로부터 당직자망년회 명목 등으로 총 550만원을 제공받음.

사례 ⑤ 공천 관련 기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2월 A정당 ◇◇군의원 예비후보자 ○○○이 공천을 부탁할 목적으로 공천심사위원인 □□□의 부친 △△△의 집 방문시 △△△으로부터 토지 구매를 제안받고 △△△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토지를 △△△와 2억 5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선대표자 발표 첫날인 4월 27일에 명단에서 누락되자 중앙당 민원실장 ▲▲▲에게 사실 관계를 말하며 공천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을 제공함.

※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발표일 익일인 4월 29일 △△△로부터 2천만원을 돌려받음.

7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례 및 판례

사 례 ① 고용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 (벌금 1,000만원, 추징 5,500만원)

A주식회사 회장 ○○○은 회사 제2공장을 ◇◇시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시 □□□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경영진과 조직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지점 및 영업소 직원들에게 △△△후원회에 대한 기부를 권고하고, 기부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파악하는 등 후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전국 각지의 직원 542명으로 하여금 불과 14일 동안 10만원씩 모두 5,420만원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기부하도록 함.

판례 I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A주식회사 ○○○회장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위반됨. <대법원판결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례 II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판결 2004.4.27 선고 2004도482>

사 례 ② 업무상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 (벌금 1,000만원)

A건설 회장 ○○○은 수년 전부터 추진하던 종합리조트 건설이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던 중 당시 ◇◇도지사 후보자 △△△이 리조트 건설에 우호적 입장을 나타내자 △△△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사장 5명에게 “현재 도지사 후보자 중 △△△이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에 호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니 A건설의 미래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우리와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후원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현금을 하청업체 등 사장에게 거둬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함.

8 불법 후원금의 반환

주 체

후원회 회계책임자

반 환 기 간

30일 이내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법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대 상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에게 반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회수)

국 고 귀 속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고귀속

많은 사람의 작은 후원이 5천만을 위한 큰 정치를 만듭니다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인터넷으로 쉽게 :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가능 (신한, 롯데, 신한, 비씨, 국민카드 포인트)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 숫자 539 (오~선거) +
통신3사 인터넷 접속키 (NATE ● SHOW ● QX)
- 신용카드 포인트로 편리하게 : 신한 아루민 (arumin.shinhancard.com)
롯데카드 포인트 (www.lottecard.co.kr)

정치후원금 후원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공제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보세요 • 정치후원금센터 : www.give.go.kr • 문의전화 : 02)523-6485